

「교무위원회 규정」 신구조문대비표

2024. 11. 25. 개정 판 (시행 2024. 11. 25.) → 2026. 6. 18. 개정 판 (시행 2026. 7. 1.)

바뀜 3 · 신설 0 · 삭제 0 · 번호 변경 0

공식 원본 law.syu.ac.kr · <https://suleap.syu.my/r/309/compare?from=1639&to=1774> · 내려받은 때 2026. 10. 22. 오후 6:18:21 · 밑줄은 바뀐 부분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학칙72조」에 근거하여 교무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학칙73조」에 근거하여 교무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6-06-18>
제2조(구성) 교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총장(위원장), 교무처장(서기), 부총장, 각 처장, <u>재무처장</u> , 교육혁신원장, 국제교육원장, 학술정보원장, 교양교육원장, 생활교육원장, 각 단과대학장, 각 대학원장, <u>S/W융합교육원장</u> 이 된다. <개정 2016-02-29>	제2조(구성) 교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총장(위원장), 교무처장(서기), 부총장, 각 처장, <u>대학평의회의 의장</u> , 교육혁신원장, 학술정보원장, 교양교육원장, 생활교육원장, 각 단과대학장, 각 대학원장, <u>AI융합교육원장</u> , <u>총장특보</u> , <u>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</u> 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초청위원을 둘 수 있다. <개정 2016-02-29>
제5조(기능) 교무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 1. 대학(원) 학과, <u>부속 기관 및 부설 연구소의 설치와 폐지</u> 에 관한 사항 2. 학사 관련 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3. 입학, <u>수료 및 졸업</u> 에 관한 사항 4. <u>교수</u> 의 교무에 관한 사항	제5조(기능) 1. <u>교육조직, 부속시설과 부속기구의 설치·운영 및 폐지에 관한 사항</u> 2. 학과 또는 학부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. 학사 관련 규정·내규·지침의 제정,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. 입학·수료·졸업에 관한 사항 5. <u>교원 및 교무</u> 에 관한 사항 6. <u>교무 관련 위원회의 설치·운영 및 폐지에 관한 사항</u> <전면개정 2026-06-18>

개정문 (참고본)

원본(law.syu.ac.kr)에 개정문이 없어, 직전 판과의 신규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.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.

「교무위원회 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「학칙72조」"를 "「학칙73조」"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구성) 교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총장(위원장), 교무처장(서기), 부총장, 각 처장, 대학평의회의 의장, 교육혁신원장, 학술정보원장, 교양교육원장, 생활교육원장, 각 단과대학장, 각 대학원장, AI융합교육원장, 총장특보,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초청위원을 둘 수 있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제5조(기능) 1. 교육조직, 부속시설과 부속기구의 설치·운영 및 폐지에 관한 사항
2. 학과 또는 학부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
3. 학사 관련 규정·내규·지침의 제정,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4. 입학·수료·졸업에 관한 사항
5. 교원 및 교무에 관한 사항
6. 교무 관련 위원회의 설치·운영 및 폐지에 관한 사항

부 칙

이 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